

석사학위논문

제주도 친환경학교급식 실시  
과정에 관한 고찰

지도교수 양진건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고영민

2005년 8월

# 제주도 친환경학교급식 실시 과정에 관한 고찰

지도교수 양 진 건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제출자 고 영 민

고영민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5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국문 초록>

## 제주도 친환경학교급식 실시 과정에 관한 고찰

고 영 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지도교수 양 진 건

본 논문은 제주도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하여 아래중학교 ‘초록빛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의 방법 제시와 더불어, 학교급식개선운동의 다양한 방법적 접근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친환경학교급식 실시과정에 대한 조사 방법은 아래중학교 ‘초록빛 학교’와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그리고 ‘제주시 친환경급식추진실무협의회’의 활동을 순차적으로 정리하였다.

아래중학교 ‘초록빛 학교’운동은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라는 법적 근거에 접근하는 일선학교의 실천운동이었으며, 학부모나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을 대변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활성화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는 학교급식의 개선을 위하여 제주도내 100여개의 시민단체를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이라는 목표 아래 응집시켰고,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라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냈다. ‘제주시 친환경급식추진실무협의회’활동은 시범연구학교활동을 통하여 향후 전면적

---

※ 본 논문은 2005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인 친환경급식에 대비한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학교급식 혁신을 통하여 지역의 친환경산업육성 및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제주도 친환경학교급식 실시과정에서 아라중학교 '초록빛 학교'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를 실천운동의 장으로 삼았고, 조례제정운동을 통해 법적인 근거의 틀을 확고하게 마련하였으며, '제주시 친환경급식 추진실무협의회'활동을 통해 제주지역 1차산업회생과 환경보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높였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원활한 수요와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제주지역의 학교급식운동의 커다란 성과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습관의 개선을 도모하며, 학교급식과 친환경 농업을 접목시켜 제주농업 회생의 전기를 마련함을 물론, 청정제주의 실현에 이바지했다는데 있다.

#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방법	4
II. 본론	5
1. 제주도 친환경급식 실시 배경	5
가. 학교급식	5
나. 친환경농업	14
2. 제주도 친환경급식 실시 과정	20
가. 아라중학교 ‘초록빛 학교’	20
나.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및 조례제정 운동	30
다. 제주시 ‘친환경급식 추진 실무 협의회’	45
3. 제주도 친환경급식 운동의 의미	47
III. 요약 및 결론	54
1. 요약	54
2. 결론	56
참고문헌	59
Abstract	61
부록	63

## 표 목차

<표 1> 급식실시 학교수 및 학생수 현황 .....	7
<표 2> 학교급식 운영형태별 현황 .....	8
<표 3> 제주도내 학교급식 현황 .....	9
<표 4> 1인 1식 급식비 단가 현황 .....	10
<표 5>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량 변화 .....	16
<표 6> 아라중 '친환경 급식'추진 일정표 .....	24
<표 7>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수 .....	39
<표 8> 시·군별 청구인 집계표 .....	40

## 그림 목차

<그림 1> 친환경농산물 주요 유통경로 .....	17
-----------------------------	----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학교급식은 바른 식습관 교육과 전통의 식문화를 계승하며 학생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건 및 식량생산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급식법개정안, 2004).

학교급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학교급식법 제6조 1항’에서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급식을 보면 학교급식이 공교육의 뚜렷한 교육적 목표로써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급식은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게 12년 이상 날마다 한 끼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질 높은 식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교육으로서의 목표와 철학이 있어야 한다.

요즘의 식생활을 살펴보게 되면 먹거리는 매우 풍부하지만 믿고 먹을 만한 것은 별로 없는 사회에 아이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학교급식에 친환경우리농산물을 사용하게 하자는 운동이었다. 학교급식에서 친환경우리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입맛과 식생활 문화의 습관을 올바르게 교육시키며 자신이 성장하는 환경에서 자란 농산물을 먹으며, 자연의 소중함과 함께 나눔과 연음의 이치를 깨닫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학교급식개선운동은 제주지역에서는 다

른 지역과 차별성을 가지고 활동하게 된다. 타 지역의 급식 개선운동이 당연한 나쁜 급식환경을 개선하고 우리농산물사용을 강조하는 실용주의적 운동이었다면 제주지역의 급식개선운동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수한 급식’을 제공해야 하는 당연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올바른 급식을 통한 참교육, 도시와 농촌의 공존, 환경 보존이라는 공동체 가치지향 운동으로서 추진되었다.

2003년부터 표면으로 떠오른 제주지역 학교급식개선운동은 세 개의 주요한 축으로 전개되었다. 그 세 개의 축은 첫째, 친환경급식추진을 위한 아라중학교 ‘초록빛 학교’ 운영과 둘째,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대중조직으로서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제주연대’ 조직과 그 이후 핵심적인 사업으로써 추진한 주민발의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 제정운동, 마지막으로 민·관 협의체로 추진한 ‘제주시 친환경급식 추진 실무협의회’ 활동이다. 이 세 개의 축으로 전개된 활동은 각각의 특성과 처한 조건에 의해서 활동방식이나 내용에 차이를 갖는다. 아라중학교 ‘초록빛 학교’가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이 직접 생산적 영역까지 참여하는 방식의 실천운동이었다.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는 대중운동방식을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당면 주요한 사업목표로 활동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주시 친환경급식 추진 실무협의회’는 우선 소수의 시범연구학교활동을 통하여 향후 전면적인 친환경급식에 대비한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학교급식 혁신을 통하여 지역의 친환경산업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활동하였다.

본 연구는 이 세 개의 축으로 전개된 제주지역 학교급식개선운동을 순차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의 방법 제시와 더불어, 궁극적



으로 제주지역 시민운동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전개될 학교급식개선운동에 실질적인 선례가 되는 제주지역 학교급식개선운동에 대한 다양한 방법적 접근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첫째, 아라중학교 ‘초록빛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소위원회 활동을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 사례로 보고 아라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제주에서 최초로 주민 발의에 의해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게 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시민운동의 공감대 형성과 조례제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내면서 시민운동의 한 문제점인 대중화라는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셋째, 아라중학교 ‘초록빛 학교’ 운영과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제주연대’ ‘제주시 친환경급식 추진 실무협의회’ 활동을 살펴보면서 세 개의 축으로 전개된 활동의 전개방식과 활동내용이 제주도 친환경학교급식 실시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 3. 연구 방법

학교급식개선에 관한 시민운동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라중학교 ‘초록빛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아라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친환경급식소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하여 구체화되기 시작한 학교급식개선 운동을 아라중학교 ‘초록빛 학교’와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및 조례제정운동, 그리고 제주시 ‘친환경급식추진 실무 협의회’운영에 대하여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일어난 순서대로 기술하였다.

아라중학교 ‘초록빛 학교’는 교육현장 중심의 체험학습 및 실천운동으로서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이었는데 ‘초록빛 농장’운영과 더불어 2004학년도에 실시되어진 친환경급식 정책연구학교로부터 2005학년도 확대 실시되고 있는 급식시범학교까지의 과정에 대해 아라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진행과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의 활동에 대한 조사는 각종 기자회견서와 연대에서 주최한 세미나 자료들을 참고하였으며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 관한지원조례’ 제정운동은 연대조직과 조례제정운동의 두 가지 측면으로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주시 친환경급식 추진 실무협의회’는 친환경급식 실시에 따른 지자체의 지원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친환경급식실시에 따른 필연적인 과제가 되는 예산이나 농업관련분야는 제외되었음을 밝힌다.

## II. 본 론

### 1. 제주도 친환경급식 실시 배경

#### 가. 학교급식

##### 1) 학교급식의 추진경과

학교급식의 목적은 학교급식법 제1조에 ‘학교 급식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 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 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학교 급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법전, 2003).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전쟁 재해아동 구호를 위하여 1953년~1972년까지 UNICEF 등 외국 원조기관이 지원한 농산물에 의한 초등학교 빵 무상급식에서 시작되었다. 외국원조가 종료된 1973년부터는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빵·우유 급식은 계속되었으나 규모가 축소되었고, 농어촌학교에서도 학교생산 농작물을 활용한 급식, 도시학교에서는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자체 조리하는 시범급식 등이 시도되었다.

그러던 중 1977년 빵 급식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하고 1명이 사망하

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빵 급식제도는 전면 폐지되고 우리나라의 현실과 식문화에 맞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학교급식 제도로 개선되게 되었다. 1981년에는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어 학교급식의 목적, 방법, 시설·설비, 경비부담, 전담직원의 배치 등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후 학교급식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다 1992년 『초등학교 급식 전면실시』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채택됨에 따라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초등학교 급식이 성공적으로 확대·정착되어가자 중·고등학교 급식도 조기에 확대하자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아, 1996년에는 보다 조기에 학부모들의 중·고등학교 급식확대 요구에 부응하고자 기존의 직영급식이외에 학교 밖에서 업체가 조리·가공한 식품을 학교에 공급하거나, 교내 급식시설을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위탁급식제도가 도입되는 등 학교급식 운영형태가 다양화되었다.

그 결과 1992년부터 2002년까지 8,254개교의 급식확대에 1조 3,069억원이 소요되었으며, 특수학교는 1992년부터, 초등학교는 1998년부터, 고등학교는 1999년부터, 중학교는 2003년부터 급식이 전면 실시되게 되었다.

## 2) 급식실시 현황

2004년 12월 현재 급식 실시 학교수 및 학생수 현황은 다음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전체 초·중·고·특수학교·병설유치원 15,521개교 중 91.1%인 14,145개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초등학교는 99.9%, 중학교는 97.9%, 고등학교는 98.7%, 특수학교는 94.3%, 병설유치원이 73.9%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급식학생은 전체 초·중·고·특수학교·병원유치원생 801만명 중 91.4%

인 732만명이 급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중 초등학생은 94.3%, 중학생은 94.7%, 고등학생 85.8%, 특수학교 학생 91.3%, 병원유치원생은 47.4%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표 1> 급식실시 학교수 및 학생수 현황

구 분	학교수(교)			학생수(천명)		
	전체학교	급식학교	%	전체학생	급식학생	%
초등학교	5,580	5,572	99.9	4,105	3,871	94.3
중 학교	2,890	2,829	97.9	1,940	1,838	94.7
고등학교	2,078	2,052	98.7	1,742	1,495	85.8
특수학교	141	133	94.3	23	21	91.3
병설유치원	4,805	3,550	73.9	196	93	47.4
기 타	27	9	33.3	6	3	50
계	15,521	14,145	91.1	8,012	7,321	91.4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4) 급식실시 현황 통계자료

학교급식 운영형태는 급식운영 주체에 따라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으로 대별되며, 그 세부 운영형태에 따라 직영급식은 자체조리(단독관리 및 공동관리 포함)와 공동조리로, 위탁급식은 교내조리와 외부조리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학교급식 운영형태는 다음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전체 급식실시 초·중·고·특수학교 14,145개교 중 87.3%인 12,345개교가 직영급식을 하며 12.7%인 1,796개교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 이중 초등학교는 99.3%가 직영급식, 0.7%가 위탁급식을 하며, 중학교는 72.1%가 직영급식, 27.9%가 위탁급식을 하고, 고등학교는 52.3%가 직영급식, 47.7%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표 2> 학교급식 운영형태별 현황

구 분	전 체 급식학교	직영급식(교)				위탁급식(교)			
		자체 조리	공동 조리	계	직영율 (%)	교내 조리	외부 조리	계	위탁율 (%)
초등학교	5,572	4,515	1,035	5,550	99.3	10	12	22	0.7
중 학교	2,829	1,246	795	2,041	72.1	623	165	788	27.9
고등학교	2,052	704	369	1,073	52.3	897	82	979	47.7
특수학교	133	113	16	129	97.0	1	3	4	3.0
병설유치원	3,550	1,621	1,929	3,550	100	0	0	0	0
기타	9	0	6	6	66.7	2	1	3	18.8
계	14,145	8,199	4,150	12,349	87.3	1,533	263	1,796	12.7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4) 급식실시 현황 통계자료

학교급식 경비중 시설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는 설립경영자 부담이 원칙이나 학부모도 일부 부담이 가능하며,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04년도의 경우 약 732만명의 학생급식에 소요된 예산은 연간 2조 9,051억원으로 이중 학부모가 79.4%인 2조 3,075억원을 부담하였다(교육인적

자원부, 2004).

제주도내 학교급식현황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보육시설 362개소와 학교 293개교를 포함해서 총 655개소 117,701명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급식운영 형태로는 100%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제주도교육청, 2004).

<표 3> 제주도내 학교급식 현황

시군별	학교		보육시설		계	
	개교	학생수	개소	아동수	개소	인원
제주시	90	60,221	216	9,605	306	69,826
서귀포시	46	14,844	59	3,510	105	18,354
북제주군	87	14,380	49	2,616	136	16,996
남제주군	70	9,896	38	2,629	108	12,525
계	293	99,341	362	18,360	655	117,701

출처 : 제주도교육청(2004) 제주도내 급식 현황

2005년도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1인 1식 급식비 단가 현황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학생 1인당 급식단가 현황을 보면 학생 1식당 약 1,994원의 급식비가 소요되었으며 이중 교육비특별회계예산 215원을 제외한 학부모부담액은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약 1,771원 정도로 나타났다(제주도교육청 2005).

아라중학교 친환경급식 시범학교 운영보고서(2004)에 따르면 쌀과 야채류

에 한해서 친환경 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일반 식재료와 친환경 농산물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1일 식단가의 약 23%에 해당하는 300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친환경급식 시범학교 운영보고서, 2004). 총 25가지 식재료 중 쌀과 감자, 두부, 양파, 콩나물 등 야채류를 이용한 친환경 유기농 식단으로 구성되었다. 1일 식단구성 중 친환경 식재료는 주식인 쌀과 유기농 야채 4종이었는데 이중 유기농 야채는 일반 농산물 단가에 맞춰서 공급한 가격이라고 하였다. 즉 주식인 쌀만을 친환경농산물로 사용한다고 하면 2005년도 1인 1식 급식비 단가와 비교해 보면 약 2250원 정도의 급식비가 발생하게 된다.

<표 4> 1인 1식 급식비 단가 현황

학교 급별	학부모부담				교육비 특별회계			계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소계	식품비	운영비	소계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소계
초	1,218	97	292	1,607	283	50	333	1,402	173	269	1,844
중	1,322	111	313	1,746	213	50	263	1,535	161	313	2,009
고	1,506	163	292	1,960	0	50	50	1,506	197	292	1,994
총계	1,349	123	299	1,771	165	50	215	1,481	177	291	1,949

출처 : 제주도교육청(2005) 1인1식 급식비 단가 현황



### 3) 친환경 급식의 필요성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건강하게 길러내는 것은 학교 급식의 일차적 목표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들은 고품질의 안전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크게 확산되었다. 비록 가격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비싸더라도 건강과 환경 보전을 고려하여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려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학교 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식품안전성 보장 및 우리 전통 식습관 형성 차원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입산을 주원재료로 사용하는 반 조리 제품인 냉장·냉동 식품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유전자 변형 식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아라중학교 친환경급식 시범학교 운영보고서, 2004).

문임숙(2003)은 “토양, 공기, 물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생산된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이라 한다.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재배, 유기재배가 이 범주에 들어가고 흔히 ‘무공해 식품’이라고 한다. 농약의 피해, 식품첨가물의 피해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진정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우리 삶을 매마르게 하는지 문제화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요즘 많이 목격되는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천식·비염 등도 음식만 바꾸고도 많이 좋아지는 사례들을 볼 때 음식의 중요성을 충분히 입증하는 사례들이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사이다, 콜라, 과자, 햄버거, 피자 등 인스턴트 음식을 한 가지라도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한다. 여기에 들어있는 화학 첨가물들이 아이들의 정서와 학습 능력,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3년 12월에 공포·시행되고 있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5항은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 급식에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3.12)’고 명시하여 우수농산물 사용 여건을 조성하고 있어 앞으로 질 좋은 학교 급식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자는 주장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급식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점은 실제로 급식 재료의 질적 변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4) 친환경 급식 운영의 문제점

학교 급식은 사회복지와 청소년 건강 증진보다는 편리성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도입되었고, 사회적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미흡하다(학교급식종합대책, 2004). 또한 학교 급식에서는 단가 문제나 재료 공급, 생산 문제 등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보다 가격면에서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는 사용자 입장의 현실을 비취볼 때 학교 급식에서 친환경 급식을 사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급식비를 전액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고, 생산자의 입장에서든 힘든 친환경 농법을 고집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에서 학교 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는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신보연(2003)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학교급식법(National School Lunch Act)’에 학교 급식을 농산물의 수급 안정의 일환으로 실시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학교 급식 재료를 자국산만 사용하도록 강제화하고, 원활한 수급 조절을 위하여 급식지원의 일정비율을 현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격이 폭락하는 품목은 정부에서 구매하여 학교에 '보너스(bonus commodity)'로 공급하는 등 학교 급식을 국내 농산물의 소비확대 및 수급안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가까운 일본도 학교 급식의 목표 중 하나를 '식량의 생산·배분·소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로 명시하고, 유기농산물 등 최고 품질로 공급하여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일반 농산물과의 가격 차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등 전통 식문화를 유지·계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아래중학교 친환경급식 시범학교 운영보고서(2004)에서는 학교 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할 때의 어려운 점을 다음과 같다고 밝히고 있다.

- 친환경 농산물 값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 2-3배 정도 비싸서 부담이 된다.
- 친환경 농산물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전국적인 유통망이 미흡하고,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며, 생산자가 타 지역인 경우 당일 납품 및 반품 등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
- 특정식품(생선, 야채 일부)은 우리 것을 찾기 힘들다.
- 친환경 농산물, 일반 농산물, 수입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품, 생산자, 출하량, 수요량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어 식단 작성 이후 공급 문제로 식단 변경 개연성이 크다.
- 친환경 농산물이 유기농산물, 전환기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로 나뉘어져 있어 학교 급식에서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어렵다.

- 냉장, 냉동식품 재료가 대부분 수입품이다.
-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도·농간 빈부의 차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 나. 친환경농업

### 1) 친환경농업의 개념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2004)에 의하면 “친환경농업”이란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유도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농산물의 안전성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생태계의 물질순환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준수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병해충종합관리(IPM), 작물양분종합관리(INM), 천적과 생물학적 방제기술의 이용, 윤작 등을 이용하여 농업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친환경농업은 크게 유기농업(Organic Agriculture)과 저투입농업(Low Input Sustainable Agriculture)으로 구분되어진다. 유기농업은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농약, 생장조절제, 제초제), 가축사료첨가제 등 합성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하고, 저투입농업은 병해충종합관리(IPM)기술 실천으로 농약사용량을 절감하고, 작물양분종합관리(INM)기술 실천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는 등 합성화학물질의 사용 최소화로 농업환경오염을

경감하고 자연생태계를 유지·보전하여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일컫는다(농림부, 2004).

그 동안 우리나라의 농업은 증산시책 추진으로 국민의 식량문제 해결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농약과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농업용수가 오염되는 등 농업환경 오염이 증가하였고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

최근 국민 경제가 발전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들은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희망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크게 변하고 있다. 비록 가격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비싸다고 하여도 건강과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려는 경향이 차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친환경농업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는 친환경농업을 민간단체 위주로 추진해 왔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추진되고 있다. 1994년 12월 친환경농업과를 신설하였고, 1996년 7월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을 수립하였으며, 1997년에 친환경농업육성법을 마련하였고, 1999년부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1년 1월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01~'05)을 수립하였고, 2001년부터 논농업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01.1월)하였고, 2002년에는 유기농업육성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농림부, 2004).

농림부(2004) 친환경농업정책과에 따르면 주요 품목별, 재배 형태별 생산량(2003.12월말 기준)을 살펴보면 곡류는 29천톤(7.9%), 과실류 120천톤(32.8%), 채소류 175천톤(47.8%), 서류 8천톤(2.2%), 기타 34천톤(9.3%)이었다.

친환경농산물 분류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유기재배 25천톤(6.9%), 전환기

유기재배 9천톤(2.4%), 무농약재배 120천톤(32.9%), 저농약재배 212천톤(57.8%)이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현황을 살펴보면 환경보전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대와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정책 추진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5>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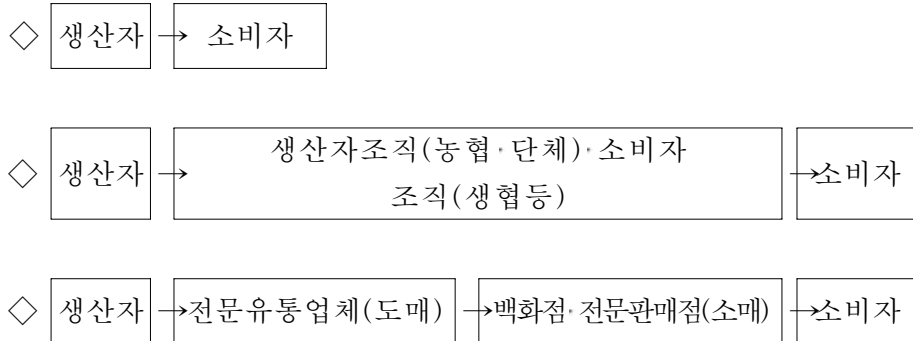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농가수(천호)	1	2	4	12	23
면 적(천ha)	1	2	4	11	25
생산량(천톤)	27	35	87	200	366

출처 : 농림부(2004) 친환경농업정책과

## 2) 친환경농산물 유통 현황과 인증제도

친환경농산물 유통 특징은 다품목 소량 생산, 생산과 소비의 제약, 일반농산물과 가격차별화를 위해 일반농산물의 경매방식과는 다른 직거래 및 전문유통업체에 의한 유통이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경로는 소비자와의 직거래, 생산자조직(농협, 친환경농업단체)과 소비자단체(한살림, 생협 등)에 의한 유통, 전문유통업체 및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소비자와의 직거래 위주보다는 전문 유통업체에 의한 유통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그림1] 친환경농산물 주요 유통경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문인증기관의 엄격한 기준에 의거 종합 점검하여 그 안전성과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4).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살펴보면 농산물은 경영관리, 재배포장·용수·종자,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를 인증기준으로 보며 축산물인 경우는 사육장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 기반, 가축의 출처 및 입식,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 복지 및 질병관리, 품질관리 등을 그 인증기준으로 본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를 실시하는 목적을 살펴보면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공급하고 우리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제고하며, 생산조건에 따른 인증으로 안전농산물에 대한 신뢰 구축하고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 체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친환경농산물인 경우 인증 종류는 유기농립산물, 전환기유기농립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나뉘며, 축산물인 경우는 유기축산물, 전환기유기축산물로 구분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과정을 살펴보면 인증 신청 → 인증 심사 → 심사 결

과 통보 → 생산 출하과정 조사 → 시판품 조사순으로 전개된다.

인증 방법은 생산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생산 여건과 품질관리상태를 심사, 인증여부를 통보해 주고 생산·출하과정 조사를 거쳐 적격품에 한해 인증표지 표시 후 출하하게 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사후 관리는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등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하며, 조사 결과 인증기준 위반 등 이상품 발견시에는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하게 된다.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보면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간이며,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인증을 받은 기관에 연장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지정 현황('04. 1월 현재)을 보면 (사)흙살림, (사)돌나라 한농복구회, (사)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 (사)국산콩가공업협회,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주)코약스가 지정되어 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4).

## 2) 제주도 친환경농업의 실태

제주지역 친환경농가에 대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의하면 2004년 현재 제주지역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약 650농가 정도가 된다고 한다.

2004년 9월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에서 실시한 친환경농업과 친환경급식에 대한 친환경인증농가 의식조사 보고서를 보면 제주도내 친환경인증 농가 중 무농약농가가 53.1%, 저농약농가 70%, 유기농농가 16%, 전화기농가가 20%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친환경인증 품목별로 살펴보면 감귤류가 51.5%를 차지하였고, 야채류 32%, 기타 29.9%로 조사되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등록된 친환경인증농가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인증농가 의식조사를 살펴보면 친환경 농업을 실시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환경을 생각해서와 건강과 먹거리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58.9%를 차지하였다(전체 친환경 농가 645농가 중 230농가). 반면 발전가능성은 27.3%, 관공서등의 행정기관에 의한 권유는 0.9%로 나타났다. 이 조사자료를 볼 때 현재까지의 친환경농업은 몇몇의 선지자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하여 점차 1차산업의 대안으로의 탐색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친환경농업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45.7%가 판매처의 곤란을 나타내는 유통문제를 들고 있으며, 영농비 증가 20%, 병충해 문제 13.9%, 기술습득곤란 4.8%로 조사되었다. 친환경농업의 특성상 기술습득, 특히 병충해 방제 기술의 습득곤란은 영농비 증가와 병충해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온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약 38.7%의 농가가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농업기술문제에 부딪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친환경급식 문제는 일차적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危害) 농산물보다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을 제공하고, 1차 산업인 농업과 연계한 지역경제의 대안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지역 친환경인증농가의 기대감과 발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89%의 농가에서 친환경 급식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 볼 때 과수류보다는 야채류의 인증농가에서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사되었다.

친환경 농가의 어려움으로 45.7%가 유통문제의 어려움이라고 조사되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조

사'의 2004년도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경로를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계조직을 통한 판매가 15.2%,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가 28.9%로 조사되었으나 제주도의 경우 통계자체가 없는 실정이었다.

## 2. 제주도 친환경급식 실시 과정

### 가. 아라중학교 '초록빛 학교'

#### 1) <친환경·유기농급식 준비위원회> 구성

2003년 3월 26일 열린 아라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의 예·결산에 대해 심의하던 중 학교급식 관련 사업이 많다는 것에 관심을 두면서 학교급식과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접목시킬 방법에 대해 논의하던 중 친환경·유기농 급식 소위원회 구성건이 진희중 학부모위원회에 의해 제안되었다.

작년에 이어 학교운영위원회활동에 있어 2년차입니다. 지난 한해의 경험을 비추보면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주어진 역할만큼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구조와 문화간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부터 전문성도 없이 제대로 준비할 여유없이 한달이나 두달에 겨우 한번 열식까 딸까 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신뢰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일이였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운영위원으로서 아라중학교 학부모를 대신하여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에서 다시 시작해보자는 마음에 학교운영에 더욱 관

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급식에 관심을 갖고 학교급식이 갖는 의미가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또 심각한 문제점등을 안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주에서 맛해도 하루에 10만 명에 가까운 많은 수가 급식을 하고 있으며 학교와 1차 산업이 잘 만나면 그것도 목적의식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맛나다면 아이들의 건강도 지키고 개방농정에 초토화 되고 있는 농촌을 희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부모 대의원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선임된 직후 인사를 통해 친환경급식개선에 노력할 것임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출처 :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급식 개선 토론회 자료, 2003).

그러나 안전 논의과정에서 운영위원들 사이에 적지 않은 견해차가 있었다. 소위원회란 안전에 대한 사전 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안전시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소규모 위원회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2002).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필요성과 학부모들의 의견,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구성 등 많은 해결해야 할 사안들을 미리 조사한 후 실시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결국 소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우선 운영위원회에 안전을 상정한 후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걸쳐서 확정하자는 의견이 많아 이에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친환경·유기농급식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진희중 학부모운영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잡아 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친환경·유기농급식 소위원회> 구성 제안서에서 소위원회구성을 제안

하였으며, 친환경·유기농 급식 추진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정과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4월 중순 전문 여론조사기관(리서치플러스)의 도움을 받아 아래중학교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친환경 급식 추진관련 학부모의식을 설문 조사하였다.

청소년기는 건강한 마음과 신체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식생활에 대한 바른 의식과 문화를 형성하고 좋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식생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과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친환경·유기농산물은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Fresh, Clean, Green* 식품(FCG)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유기농급식 추진은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기조를 긴밀하게 결합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과 현재 위기로 치달고 있는 1차산업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친환경·유기농급식을 우리 아래중학교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와 정책 대응 및 친환경 식생활 지수를 마련하고자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출처 : 아래중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록-제안서 2003).

학부모설문조사를 살펴보면 급식개선 논의의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좋은 생각이라는 의견이 전체 84.5%로 나타났고, 아주 좋다는 의견도 29%를 차지하여 통상적인 의식조사에서 나타나는 편의를 벗어나 급식 개선에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품안전성 교육, 유기농 농장방문 등의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사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혀 생각이 없다는 의견은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함께 전체 응답자의 2.8%수준인 4명의 응답자에 불과하고, 학부모들의 적극참가 9.9%, 가능한 한 참여의지가 52.1%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친환경 유기농 급식 추진과 관련한 의견은 전혀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2명으로 1.4%에 불과한 반면, 급식비 추가부담의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10.6%이었다. 학부모 부담에 대한 설문에서는 망설일 것으로 분석되는 학부모 층이 40.8%로 많은 것으로 보아 아라중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유기농 급식 프로그램은 당국의 정책적 지원과 유기농 생산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시행하고, 교육 및 시찰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해 학부모의 협조를 얻는 순위를 밟아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출처 :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급식 개선 토론회 자료, 2003).

‘친환경·유기농 급식’ 소위원회 구성과 역할을 살펴보면 소위원회 구성으로는 지역위원 1인 학부모위원 1인 교사위원 1인을 두고 영양사선생님, 환경관련 또는 2004년도 시범학교 추진 관련 선생님 1인을 자문위원으로 두었다. 위원장 1인에 위원은 필요시 업무를 분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부모 가운데 희망자 약간 명을 자원봉사자로 사업추진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출처 :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급식 개선 토론회 자료, 2003).

<표 6>는 아라중학교 ‘친환경 급식’에 관련된 추진 일정계획표이다. 친환경급식에 관련된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들을 계획하여 실시하였다.

‘친환경 급식’추진과정에서 많은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협조를 얻게 되었고, 이는 친환경급식에 대한 인식과 학부모의 참여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표 6> '친환경 급식' 추진 일정표

시기	사업 내용	협조 기관	비고
3~4월	* 2003.3.26 준비위원회 구성 소위 확정, 사업추진기 획안 확정	학교운영위원회	
5월	* 학부모 대상 식품안 정성 교육 및 친환경 · 유기농 농장 방문 * 학부모 자원 봉사자 모집 *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지역사회학교, 초 록빛 농장 지역네트워 크 추진	학부모회, 어머니 회, 들꽃 농장, 흙 살림 농장	제주도교육청 환경분과위원회 제주생활협동조합 녹색제주연구소 농협제주지역본부등
6월	재학생 초록빛교실 운 영, 식생활의식 및 급식 현황조사, 간담회(교사, 학생, 학부모 및 관계 전문가)	과학, 기·가, 환경 담당교사, 영양사, 생산자단체, 시장 조사전문회사	제주생활협동조합 EM연구소
8월	학교급식 선진지 답사 (일본) 친환경 식생활 지수 연 구	자치단체, 자비부 담(5:5추진)	리서치-플러스연구 소
9월	식생활 개선(식사예절 등) 운동 및 친환경·유 기농 부분 급식 추진	EM연구소, 흙살림	초록빛농장운영
10월	시범학교 추진안 마련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제주도교 육청	청와대 국정과제 T/F
12월	평가회	교사, 학생, 학부모	협력기관 및 단체
2004.2	보고서 제출	운영위원회	

(출처 :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급식 개선 토론회 자료. 2003)

## 2) <친환경·유기농 급식 추진위원회> 구성

2003년 5월 2일 열린 2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준비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친환경·유기농급식 추진위원회>구성을 상정,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2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친환경급식 추진활동을 위한 이름을 논의하던 중 고흥식 아라중학교 교장의 제안으로 '초록빛 학교'란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초록빛 학교'란 명칭은 친환경급식추진 사업을 하면서 학교명을 사용하지 말고 '초록빛 학교'란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친환경급식 추진활동이 아라중학교에만 국한된 일이 아님을 나타낸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또한 아라중학교가 친환경급식 추진활동에 협조는 하되 학교에서 친환경급식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친환경급식운동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진회중 학부모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박희수 지역위원, 김종근 교사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양태문 환경담당교사, 허정희 영양사를 자문위원으로 두었다. 이에 <친환경·유기농 급식 준비위원회>는 그 역할을 <친환경·유기농 급식 추진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친환경·유기농 급식 추진위원회>는 준비위원회에서 추진 중이던 일정을 계속 전개해 나갔다.

## 3) 친환경급식 추진을 위한 <초록빛 학교> 출범

5월 11일 친환경·유기농 급식추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아라중학교 <초록빛 학교>는 친환경급식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 조사,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생

산자 단체,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학교네트워크이다. <초록빛 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생소한 모델이어서 초기설정이 어렵기는 했지만 가장 뛰어난 모델을 창출하고자 나름대로 뚜렷한 철학과 전략적 사고를 밑바탕으로 디자인하였다.

<초록빛 학교>는 아이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사회적 기본 가치 실현과 교육이 국가미래에 관한 한 경제와 안보에 앞선 국가경영의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패러다임을 주지하고자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포하였다. 또한 참여와 연대를 통한 사회혁신 체제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구성원은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 주민과 지역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친환경 생산자 단체는 물론 기초행정기관까지 참여하여 조직화했다.

<초록빛 학교>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초록빛 농장>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친환경급식을 학부모의 추가 부담 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실천적 모범과 아이들에게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마련한 가족주말농장이다.

아이들은 우리들의 희망이며 지역사회와 국가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수한 급식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몫이지만 제도적 여건이 아직 미비된 연유로 학부모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선생님들과 협력을 통하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나아가 제주지역 1차 산업 희생과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역사회학교 운동입니다.

(출처 : 2003 '초록빛 농장' 설립배경문중에서)



2003년 7월 1일 <초록빛 농장> 분양은 참여자들의 주인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적절히 결합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전체 농지를 5평 소단위로 분할하여 개인별로 분양하여 관리하는 주말 가족농장장식이다. 분양자는 일정액의 농장운영비를 납부하고 생산물의 절반은 아래중학교 학교급식에 제공하며 나머지는 개인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003년 7월 11일 <초록빛 농장> 분양 설명회에서는 친환경 농업 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김정렬(흙살림이사)이 참여한 학부모들에게 <초록빛 농장> 참여를 통하여 자연과 사회와 인간에 대한 올바른 삶의 가치관 형성의 의의를 전달하였다.

...저는 이 <초록빛 농장>에서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흙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잡초하나 먹여보지 못한 우리 아이들에게 일하면서 흙리는 땀 한 방울의 소중함을 알고 대자연의 순리에 순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정렬 농장장(‘초록빛 농장’분양설명회에서)

8월 1일 분양자를 발표하여 <초록빛 농장>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래중 학생동아리 1팀, 아래중 가족 13팀, 아래중 교사 8, 지역주민 7, 학부모 단체 2팀, 환경단체 2팀, 정신지체 1급 특수법인 원아 1팀 등 총 33개팀이 분양을 받게 된다.

그러나 처음 마련한 농장부지가 잡석이 과다 출현하여 농사를 짓기에 부적절하여 고영표(아라동 총무계장)과 유지호(제주시청 산업과)의 협조로 9월 3일 새로운 농장부지를 마련하여 양진수(제주시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으로 농장 트랙터 정지작업을 마치고 9월 초에 <초록빛 농장> 분양자를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되었다.

학교인근(제주시 아라1동 소재)에 700여 평의 휴경지를 무상 임대하여 학부모와 교사들이 힘들게 경지정리를 하여 <초록빛 농장>을 마련하였다. 2003년 9월 14일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일주일 연기하였다. 2003년 9월 21일, 150여명의 농장참여자 가족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록빛 농장>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농장 출범식이 끝나고 상추, 배추, 열갈이 배추, 무를 이식 및 파종하였다. 농장운영은 흙살림 제주도지부와 제주시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기술지원 및 종자등을 지원주었다. 농장은 일체의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전형적인 친환경농법으로 운영되었다.

11월 1일 <초록빛 농장>에서 첫 수확한 상추와 사단법인 흙살림에서 제공한 무농약 쌀, 들꽃농장에서 제공한 향아리콩나물을 주재료로 식단을 구성한 친환경급식 시식회가 11월 3일 아라중학교 급식실에서 열렸다. 시식회에서는 표선농민회로부터 친환경 감귤을 공급받아 학교급식에 제공하였다. 단한 차례였지만 학교급식에 생산자 직거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4) 친환경급식 시범학교

2003년 12월 18일, 제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시가 요청한 친환경급식 정책연구학교 지원예산 4천만원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다.

2004년 2월 11일 제4차 제주시 친환경급식 추진 실무위원회에서 한라초등학교와 함께 연구학교로 확정되었다.

아라중학교에서는 2004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초록빛 농장’ 체험학습을 통한 친환경 학교 급식의 의식 확산>이라는 주제로 시범은

영을 실시하였다. 운영 실천 과제로는 첫째,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초록빛 농장’을 운영하고 두 번째로 친환경 학교 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킨다로 정하였다.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초록빛 농장’ 체험학습을 운영하였으며 전교생에게는 친환경 관련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제주시 친환경급식 추진 실무위원회에서 마련한 친환경급식 시범학교 지원 예산 사용 지침에 따르면 첫째, 친환경 식재료비 구입에 50% 이상 의무 지출해야 하며 둘째, 현장학습을 위한 농장운영 및 생태학습에 25% 이상을 의무 지출해야 한다고 하였고 셋째, 친환경 식재료 구입은 제주지역 생산농가나 생산자 단체를 통하여 조달하여야 하며 넷째, 제주시 농협이 적극 참여하여 학부모 추가 부담 없이 작년기준 물품과 물량을 최상품으로 제공한다고 하였다(2004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계획, 제주도교육청).

친환경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우선 사용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제주지역 농·수·축산업 발전 및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제고로 청정제주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주도교육청은 2005학년도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시범운영학교 선정을 위해 2004년 12월 12일 제주도내 일선 학교로부터 시범학교 운영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6곳과 초등학교 21곳 등 모두 48개 학교가 시범학교 지정을 희망했다.

특히 제주시지역 초등학교들이 친환경 우리농산물 급식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8개교가 시범운영학교 지정신청을 했고 북제주군 지역 신청학교도 6개교에 달했다. 반면 중학교의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해 남제주군 지역에는 시범학교 지정 신청을 한 학교가 한 군데도 없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지역에는 각각 1개교에 그쳤다. 북제주

군 지역의 경우 3개 중학교가 신청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북제주군 지역 2개교, 제주시지역 1개교가 시범운영 신청을 했고 서귀포시지역과 남제주군 지역에는 신청학교가 없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지역과 학교급별 안배, 친환경급식 시범대상 전체 학생수 등을 감안, 남제주군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서귀포시지역 고등학교 각 1개교를 임의로 선정하는 등 29개교를 친환경우리농산물 시범운영학교로 지정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당초 30개교 9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을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시범운영학교와 학생수를 29개교 1만1180명으로 조정, 확정했다.

제주지역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은 2005년도에는 전체 학생의 11.5%인 29개교(병설유치원10, 초11, 중4, 고4)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고, 2006년도에는 30%로 확대되며 2007학년도에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소요예산은 자치단체인 제주도와 시·군에서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

## 나.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제주연대’ 조직 및 조례제정운동

학교급식개선에 대한 논의는 2003년 이전부터 전교조, 농민회, 제주생활협동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에서 끊임없이 논의되던 사안이었으며, 아라중학교 친환경급식 추진은 이전의 논의를 조직화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 1)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제주연대 조직

### 가)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2003년 4월 2일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실에서 전교조, 제주생협, 아라중학교운영위원, 참교육학부모회가 참여한 가운데 친환경·유기농 급식 추진을 위한 관련단체 1차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1차 간담회에서는 진희중 아라중학교 학교운영위원으로부터 아라중학교 친환경·유기농급식 추진관련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민적 여론형성과 실질적 성과를 담보하기 위한 연대조직체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된다.

2003년 4월 28일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실에서 시민단체 2차 간담회 및 토론회를 열게 된다(참여단체: 참교육학부모회, 제주생협, EM환경센터, 녹색제주연구소, 흙살림, 전교조, 아라중학교운영위원, 농어민신문, 리서치플러스). 2차 간담회에서는 연대사업체 조직을 위한 준비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학교급식과 제주지역 1차산업의 현황, 특히 친환경 농업의 실태에 대해서 토론하게 된다. 학교급식과 1차산업에 대해서 이용중 동초등학교 교사로부터 기초발제가 있었고 전우홍 흙살림 제주도지부 이사로부터 제주지역의 친환경농업의 현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2003년 5월 16일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실에서 연대사업체구성을 위한 3차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다(참여단체 : 제주생협, 농민회, 여성농민회, 녹색제주연구소, 한농연, EM환경센터, 흙살림,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아라중학교운영위원). 3차 간담회에서는 아동의 영양 실태와 식생활 개선, 전국급식개선 운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사회단체에 연대체 구성을 위한 제안서(부록1)를 발송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아동영양 실태와 식생활개선, 전국급식개선운동 현황, 지역연대체 구성의 의의와 활동방향에 대한 기초발

표가 있었다.

나) 연대체 구성을 위한 대표자회의

2003년 6월 19일 중앙성당 회합실에서 시민사회단체 1차 확대 대표자회의(참여단체 : 정의구현사제단, 농민회, 민노총, 전교조, 녹색소비자연대, 제주생협, 아라중운영위원, 한농연, 유기농협회, 여민회, EM환경센터, 정토회, YWCA, YMCA, 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주민자치연대, 녹색제주연구소)가 열렸다. 연대체명칭을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로 정하고, 7월 3일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9월 중에 본조직을 결성하기로 잠정결정하게 된다.

2003년 6월 26일 중앙성당 회합실에서 시민사회단체 2차 확대 대표자회의가 열린다. 2차 회의에서는 준비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상임대표단을 결정하였다. 또한 준비위원회 출범을 7월 3일 중소기업센터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다)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준비위원회

2003년 7월 3일 중소기업센터 대회의실에서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준비위원회의 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진다. 기자회견에서는 사업목표와 조직원칙을 공표함으로써 조직구성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29단위 사회단체와 지역인사가 참여).

집행위원장에 이용중 동초등학교 교사를, 사무처장에는 진희종 아라중학교 친환경급식 추진위원장을 임명하였다.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의 사업목표로는 첫째,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실현 둘째, 공공급식(무료급식 혹은 제한적 무료급식), 셋

재료는 농촌회생에 기여한다라 두었다.

또한 완전개방이라는 조직의 원칙을 두어 지역, 나이, 성, 정치적 성격에 불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어떠한 제한없이 가입과 탈퇴를 개방하였다.

주요활동을 살펴보면 2003년 8월 12일 제주시장실에서 상임대표단과 제주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민·관 합동으로 학교급식 혁신에 대한 전략적 논의를 위한 가칭 「학교급식혁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다.

이 면담에는 제주시장 및 고복수 산업과장, 이영민 고문, 이용중 집행위원장, 양진건 상임대표, 김대환 상임대표, 황인주 상임대표, 김성옥 상임대표, 고희정 생협 급식모임 대표, 김정렬 정책위원당, 진희중 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

2003년 8월 28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준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급식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조직 규약 및 조례안의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때 신정훈 나주시장의 나주시 급식조례 제정 배경과 의의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 라)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출범

2003년 10월 11일 제주시교육청대강당에서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의 출범을 대내외에 선언하고, 조례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선언 및 조례제정청구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의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8-9월 조직을 확대하고 8월 28일에는 참가 단체 및 활동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9월 19일에는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출범식 및 토론회

를 개최하였고, 급식조례제정운동과 식생활 의식 개혁운동 및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2) 조례제정운동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에 의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의 절차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조례안의 작성과 청구대표자의 선정해야 한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서명을 받기 전에 먼저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내용을 확정해서 조례 제·개정청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절차를 시작하려면, 우선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할 조례의 주요골자와 제·개정이유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현행 제도는 청구서 제출의 단계에서 조례의 제·개정내용을 조문화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청구를 하는 시민들이 조문화를 하지 않고 청구를 하면,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이 조례의 조문을 만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조례를 제·개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조례의 조문 속에 충분히 담기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조문까지도 작성해서 제·개정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청구를 하기 전에 미리 청구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어떤 시민 1사람이 본인의 생각하는 바에 따라 조례 제·개정청구를 하려고 본인을 대표자로 해서 청구를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숫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조례 제·개정청구를 하려면, 이미 형성되어 있던 단체나 모임차원에서 추진하거나 조례 제·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는 상당한 숫자의 시민들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그 중에



서 조례 제·개정청구서에 대표자로 기재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이때, 만약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단체나 모임차원에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단체나 모임의 대표자 명의로 할 필요는 없다. 조례 제·개정운동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자로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청구서의 제출 및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조례 제·개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대표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조례의 제정이나 폐쇄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청구서 제출 시에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표자가 20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3단계에서는 수임인을 선정 및 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 받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취지를 공표한 이후에는 곧바로 서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한 날로부터 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는 6개월, 시·군·자치구는 3개월 이내이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서명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표자만의 힘으로 많은 숫자의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기는 무리이다. 그래서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수임인을 선정해서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수임인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수임인이 선정되면 대표자는 수임인의 성명 및 위임연월일을 지방자치단

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의 4단계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수임인까지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서명의 방식은 청구인명부에 20세 이상의 주민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는 것이다.

서명을 할 때에 청구인 명부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작성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명을 마치게 되면 5단계에서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다. 대표자는 서명을 받은 주민숫자가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숫자 이상으로 된 때에는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청구인 명부 제출이 끝나면 6단계로 청구인 명부의 열람 및 청구수리에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 명부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별로,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별로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완료된 경우, 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 조례가 조례 제·개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수리해야 하고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7단계로 조례(안)의 의회제출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서의 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안에 그 의견을 덧붙여 지방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조례제정사업은 이 사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전개되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과 동시행령이 요구하는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의 절차에 맞추어 한단계 한단계 사업을 진행시키게 된다.

2003년 9월 23일 조례제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제정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으로 채철성(전교조제주지부 부지부장)을 선출하게 된다. 2003년 10월 11일 제주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조례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선언 및 조례제정청구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구체적인 조례제정서명운동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03년 10월 21일, 친환경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선포 기자회견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갖고 조례청구 대표자선임을(대표자 고병수 신부) 제주도지사에게 요청한다.

- 2003년 11월 19일, 조례서명을 주도할 66명 수임인에 대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제주도에 접수함

- 2003년 11월 24일,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부 받고 서명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

- 2003년 11월 24일, '제주도 친환경학교급식 조례청구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며'의 제목으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자리에서 참석자와 기자단의 서명을 시작으로 조례제정의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부록4).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들 중 일정숫자 이상의 서명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것을 지방의회의 안건으로 회부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의회에 안건을 낼 수 있는 주민발안제도로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활용을 통해 주민들은 직접민주주의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그리고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주도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 당시 20세 이상 도민이 약 35만명으로 나타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가 7,800명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표 7>에서 보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가 잘 나타나 있다.

<표 7>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수(단위 : 명)

20세 이상 주민수	연서주민수	20세 이상 주민수	연서주민수
1만5천 미만	370	40만 이상 50만 미만	10,000
1만5천 이상 3만 미만	680	50만 이상 80만 미만	11,000
3만 이상 5만 미만	1,200	80만 이상 110만 미만	18,000
5만 이상 7만 미만	1,900	110만 이상 150만 미만	25,000
7만 이상 10만 미만	2,500	150만 이상 200만 미만	33,000
10만 이상 15만 미만	3,300	200만 이상 250만 미만	43,000
15만 이상 20만 미만	4,600	250만 이상 300만 미만	53,000
20만 이상 25만 미만	5,900	300만 이상 500만 미만	62,000
25만 이상 30만 미만	6,900	500만 이상 700만 미만	102,000
30만 이상 40만 미만	7,800	700만 이상	140,000

(출처 : 지방자치법 제 13조)

- 2003년 11월 28일, 시청 어울림마당에서 거리서명을 하며 조례에 대한 가두 홍보를 시작하였다.
- 2003년 12월,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의 법적 뒷받침을 확보하게 되었다.
- 2004년 1월 4일, 조례특위를 열고 교육감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 발송하기로 결정하였다.
- 2004년 1월 9일, 조례안에서 구체화되지 못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사업단’과 관련하여 정책간담회 개최하였다.

- 2004년 1월 9일~13일, 서명 완료에 따른 지역별(읍면동별) 서명지 분류작업 및 유효서명지 자체 판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2004년 1월 13일, 대표 자회의를 개최하여 서명완료 보고하였다. 총 22,000명의 서명자 중 자체 분류작업 결과 11,505명이 유효한 서명으로 판별되었다.

무효 판정의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3항,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나타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20세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2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2.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표 8> 시·군별 청구인 집계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일도1동	92	대륜동	343	조천읍	374	성산읍	100
일도2동	2026	동홍동	212	구좌읍	324	남원읍	205
이도1동	256	예래동	30	한경면	184	대정읍	213
이도2동	1045	영천동	38	한림읍	308	표선면	115
삼도1동	345	효돈동	68	애월읍	405	안덕면	169
삼도2동	251	대천동	253	추자면	4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용담1동	178	중문동	86	우도면	8			
용담2동	254	서홍동	89					
건입동	502	정방동	36					
화북동	330	중앙동	56					
삼양동	479	송산동	56					
봉개동	42	천지동	28					
아라동	256							
오라동	111							
연동	731							
노형동	727							
외도동	119							
이호동	43							
도두동	14							
7,801		1,295		1,607		802		11,505

(출처 :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2004)

- 2004년 1월 14일, 조례제정청구인명부 제출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제주도에 접수하였다(부록 5). 기자회견은 2004. 1.14 10:00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이용중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채질성 조례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사업보고가 있었다. 이어 고병수 신부님으로부터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기자회견장에는 고병수신부님, 공무원노조본부장(김영철본부장), 흙살림(백경호회장), 주민자치연대(김상근대표), 환경운동연합(이영웅사

무국장), 김대호 리서치플러스소장, 전교조(이석문지부장), 참교육학부모회(송상용지부장), 문시병 한농연회장, 임혁재 농업기술자연합회장, 강봉균(민주노동본부장), 박재완(우리농촌살리기운동사무국장), 이용중집행위원장, 채칠성 조례특위위원장, 진희중사무처장이 배석하였다.

2004. 1. 14 10:30에 청구인 접수서를 채칠성 조례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하였다. 이때 김경택 정무 부지사가 접수하였다. 급식 연대 측에서는 흙살림(백경호회장), 주민자치연대(김상근대표), 김대호 리서치플러스 소장, 전교조(이석문지부장), 참교육학부모회(송상용지부장), 임혁재(농업기술자연합회장), 박재완(우리농촌살리기운동사무국장), 채칠성조례특위위원장, 진희중사무처장이 배석하였고, 제주도에서는 최수행 환경농업계장, 송두영 (화회생산유통지원)이 배석하였다. 접수 후 양측은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례제정 향후 일정추진과 업무 협의에 있어서 아이들 건강증진과 제주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상호 동반자적 위치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2004년 1월 19일, 조례제정이 청구되었음을 공포하였다(제주도).

- 2004년 1월 30일, 학교급식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국무조정실 개선과제 세부추진계획).

조례안 의결 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04년 2월 11일, 조례안 청구조건 심사수리

제주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



관한지원조례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 11,505명중 주민 등록번호가 틀리거나 거주지이전 등의 사유 등으로 무효 처리된 405명을 제외한 11,100명을 유효서명인으로 확정하여 수리하고 제주도의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2004년 3월 26일,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하였다.

- 2004년 3월 30일, 제주도청을 방문하여 청구인 의견 제시하였다.

- 2004년 4월 9일, 제주도가 행자부의 입장 등을 담은 의견을 첨부하여 조례안 원안을 제주도의회에 부의, 제출하였다(부록 6).

- 2004년 4월 21일, 급식조례안 심의의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다(부록 7).

- 2004년 5월 25일, 급식조례안 수정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되었다(‘친환경 학교급식지원사업단’의 삭제 등 일부 수정)(부록 8).

- 2004년 5월 27일, 도지사 후보에게 친환경급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안되었다.

- 2004년 6월 10일, 행정자치부가 제주도에 조례안 재의 요구 지시 -국내 산이라는 용어가 GATT에 위반이라고 하였다.

- 2004년 6월 16일,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조례안 재의 요구하였다(‘국내산’삭제요구).
- 2004년 7월 6일, 급식연대 대표단이 지사를 면담하여, 조례재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2005년부터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2004년 7월 16일, 제주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재의결하였다.
- 2004년 7월 21일, 조례 공포되었다(제주도 조례 제 2443호)(부록 9).
- 2004년 8월 12일, 행정자치부가 대법원 제소방침을 철회함으로써 사실상 확정되었다.
- 2004년 8월 24일, 제주도가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을 2005년 시범 실시 후 단계별 추진을 통해, 오는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기본 방향을 발표한다.
- 2004년 9월 13일, 조례규칙(안)을 관련기관들과 사전 의견을 조회하였다(여성정책과, 시군, 도교육청, 급식연대).
- 2004년 9월 16일,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의 시행규칙안의 검토를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를 비롯하여 4개 시·군 및 교육청에 의뢰해 와 급식연대의 입장을 대표자 회의에서 숙의하고 대책 수립하였다.

- 2004년 9월 20일, 조례시행규칙에 대한 급식연대의 입장을 제주도에 공문 접수하였다.

- 2004년 10월 2일, 제주도와 급식연대가 협의하여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지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였다(부록 10).

#### **다. 제주시 ‘친환경급식 추진 실무협의회’**

2003년 8월 12일 급식연대상임대표단과 김태환 제주시장과의 면담에서 학교급식혁신을 통한 아이들의 건강과 친환경산업 육성전략을 논의할 민·관 합동의 [학교급식혁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은다.

##### **1) 제주시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추진 실무협의회’ 구성**

2003년 9월2일, 제주시청회의실에서 제주시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추진 실무협의회를 개최되었다. 이때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추진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협의회위원은 9명이며 위원장은 고복수 제주시청 산업과장,부위원장 김영생 전도 초중고 어머니회장, 간사 진희중 아라중 친환경급식 추진위원장이 선임되었습니다. 황인주 제주도영양사회회장,이용중 동초등학교 교사, 김영생 전도 초중고 어머니회 회장, 김정열 흡살림 제주시 지부장, 송상용 친환경급식 제주연대 상임대표,김동호 제주시교육청 학무과장,진희중 아라중 친환경급식 추진위원장, 고복수 제주시 산업과장, 진항봉 제주시 위생과장등이 위촉되었다.

제주지역 1차산업 회생과 환경보전에 기여하여 아이들의 건강과 친환경 농업육성 추진을 위하여 중단기 사업계획을 갖고 활동하기로 하였다.

## 2) 제주시 친환경학교급식추진 기본계획안

2003년 11월 13일, 제3차 실무협의회에서 제주시 친환경학교급식추진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었다. 제3차 실무협의회 결의 사항을 보면 첫째, 2004학년도에 친환경 급식 시범 운영학교를 지정하여 전면적인 친환경 급식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둘째, 친환경식재료는 국내산 유기농 쌀과 배추, 무, 상추, 깻잎, 마늘, 오이, 양파, 감자 등 8대 지역 발작물과 그 외 콩나물, 고추 등 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친환경 작물을 공급한다. 셋째, 규모는 초등 1~2개교, 중등 1~2개교 약 5000여명 정도를 기본 단위로 선정하며 넷째, 선정은 공모 방식을 통하여 참여의지와 준비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라고 하였다. 다섯째, 일체의 추가 식재료비는 제주시가 부담하고 공모시 문서로 명기하며 여섯째, 시범 운영 방식은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나 업무를 최소화하여 관계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인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에 기초 조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최대한 협력을 이끌어낸다고 결의하였다(2004학년도 친환경급식추진 기본계획안).

2004년 2월 11일, 제 4차 실무협의회에서 친환경급식시범학교가 확정되었고 시범학교 운영 지침이 마련되었다. 친환경급식시범학교로는 아라중학교와 한라초등학교가 선정되었다. 두 학교에 각각 2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에 대한 친환경급식 시범학교 지원 예산 사용 지침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친환경 식재료비 구입에 50% 이상 의무 지출해야 한다.
- 현장학습을 위한 농장운영 및 생태학습에 25% 이상을 의무 지출해야 한다.
- 친환경 식재료 구입은 제주지역 생산농가나 생산자 단체를 통하여 조달하여야 한다. 식재료 조달과 관련한 사항은 실무협의회가 최대한 지원한다.
- 제주시 농협이 적극 참여하여 학부모 추가 부담 없이 작년기준 물품과 물량을 최상품으로 제공한다.

### 3. 제주도 친환경급식 운동의 의미

제주도 친환경학교급식 개선운동이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진도적으로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을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결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전국에서 최초의 일을 성공하기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앞으로 제주도내 모든 학교에 친환경학교급식이 실시되는 날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리라 본다.

아라중학교 ‘초록빛 학교’는 교육현장 중심의 체험학습 및 실천운동으로서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이 직접 생산적 영역까지 참여하는 방식을 취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활성화 방안의 큰 대안으로 떠오른 학교급식문제는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제주지역사회에서 1차 산업인 농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한 방법으로까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아라중학교 ‘초록빛 학교’운동은 2004년도 새로운 학교운

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04년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입후보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200여명이나 되었던 것이다. 입후보한 학부모의 변을 들어보면 아라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가정통신문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알게 되면서 자신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참여해보고 싶어 입후보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른 해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입후보한 학부모수가 약 10명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4학년도 아라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보게 되면 학부모위원 7명, 교사위원 6명, 지역위원 2명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2004년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입후보한 학부모수가 급증한 이유는 그 해 제주도교육감 선출이 있기도 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친환경급식추진 활동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아라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친환경급식추진운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란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2003년도 ‘초록빛 학교’운동이 제주지역 도민의 의식전환을 위해 선택한 방법 중 하나가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였다. 지역방송 뿐만 아니라 지방지, 중앙지, 교육방송 등에서 ‘초록빛 학교’운동에 대해서 보도하였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설문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친환경급식을 실시하면서 학부모의 부담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는 조사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초록빛 학교’운영에 있어 참가자들의 부담이 없도록 하였다. 학교운영위원들이 농장 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역자치단체장과의 여러 차례 면담과정을 통해서 학교급식에서의 친환경농산물사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이런 노력은 정책연구로써 친환경급식 시범학교의 운영으로 나타났다. 시범학교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역자치단체의 제주시에서 부담하게 되었다.

‘초록빛 농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주민의 식과 공동체정신을 심어주고자 마련한 주말 가족농장 형태의 체험학습장이었다. 2004년도에는 아라중학교 시범학교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되면서 학생들에게는 노작활동을 통해 땀방울의 의미와 농산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연의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자연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친환경농가에게는 시범학교운영을 통해 비록 주 1회, 야채에 한정되지만 직접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이 급식에 이용되기까지의 직거래를 통한 활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게 되었다. 또한 학교급식이 방학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제주농가에도 큰 희망을 주게 되었다.

‘초록빛 농장’의 성과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형 사업전개이다. 아라중학교 ‘초록빛 농장’은 제도의 개선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학부모가 직접 실천적으로 급식 개선에 참여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궁극적인 목표인 가장 안전한 급식, 공공급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와 1차 산업의 연관성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둘째로는 네트워크형 사업추진이다. 아라중학교 ‘초록빛 농장’은 단순히 아라중학교 학부모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중심으로 이 사업과 연관될 수 있는 모든 주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화하였다. 우선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는 물론 인근 지역주민과 마을회, 부녀회 등 주민자치 조직, 기초 행정기관은 물론 친환경 시민단체와 친환경 생산자 단체를 적절히 결합시켰다. 때문에 일반 학부모가 부족한 기술적 문제나 정보, 교육 등에 쉽게 협력을 얻을 수 있었다. 가령 농장 부지는 제주시 산업과와 아라동 사무소의 협조를 얻었고 트랙터 작업은 제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사 지도는 흙살

림, 교육은 생활협동조합 등 사전에 조직화되고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이다. 특히 개장 일주일을 남기고 부지를 변경해야 하고 개장식 이틀 전에 초대형 태풍이 몰아치는 등 긴박한 상황에서 사전 네트워크 구성이 결정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주었다.

세번째로는 자립형 사업추진이다. 아라중학교 '초록빛 농장'은 지금까지 일체의 학교 예산이나 행정기관의 예산지원, 학부모의 부담 없이 철저히 자립적으로 준비되었고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초록빛 농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자원봉사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물이며 이런 자립정신은 학부모로부터 많은 신뢰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불러오는 결과를 이루어냈다.

네번째는 선도적 역할이다. 아라중학교 친환경유기농급식 추진 운동은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단체별로 준비되기 시작했던 급식 논의를 조직화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전국 최초의 학교급식 혁신을 위한 민·관 합동 기구인 '제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실무협의회' 구성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전국최초로 급식조례를 제정한 나주시에서 '초록빛 농장'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의의는 2004년 들어 전국방방곡곡에서 폭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학교급식 개선의 최종 목표(가장 안전한 급식, 공공급식, 농업회생에 기여)를 명확히 실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는 대중운동방식을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로 활동하였다.

김성국(1995)에 의하면 한국 시민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은 이를 극복하려는 사회세력의 상대적 취약성에 의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였다. 시민사회의 역동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시민운동세력은 그간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대다수의 시민운동은 중앙집중주의, 서울중심주의, 명망가주위, 거대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시



민운동은 적극적이고도 광범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획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의 대중화 혹은 풀뿌리화라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의 조례제정운동을 통하여 산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100여 개 이상의 시민단체들을 통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민들이 직접 의회에 안건을 낼 수 있는 주민발안제도를 활용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의 경험과 조례 제정과정에서 상당수의 도민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성공시킴으로써 도민들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물론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조례가 실제로 지방의회를 통과하려면, 지방의회내의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도민들의 상당수가 적극 찬성하여 서명한 조례를 부결시키는 것은 지방의회로서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도민들의 원하는 조례에 대해 부결 시킨 지방위원들에 대해서는 다음 번 선거 때에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운동의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조례제정의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식을 공공성과 교육의 논리로 접근하고 공교육의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시켜,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생존권의 문제,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함께 학교주체의 민주적 자치 역량의 강화, 인간화교육으로의 소중한 생명운동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학교급식을 친환경우리농산물로 하도록 하여 성장기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이며 제주도의 미래를 담보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며, ‘아이들 우선’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했다는 것이다.

둘째, 조례제정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요구는 결국 친환경우리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해주게 되어, 위기에 처한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며 농촌경제를 살리는 촉매로 작용할 것이다.

학교급식이 전면적인 친환경급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안정적인 대규모 소비장이 형성되어 친환경농업 육성에 큰 활력소를 제공할 것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셋째, 학교급식개선운동은 결국 우리의 땅과 환경을 지켜내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이는 제주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일이 될 것이며, 또한 청정제주의 이미지가 고양되어 관광산업에도 탄력을 주고, 궁극적으로 제주 공동체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

넷째, 조례제정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은 도지사나 의원발의에 의한 청원형태의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제주도민 스스로가 발의 주체가 되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도민이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행정의 관행과 제도를 바꿔냄으로써, 도민의 힘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낸 첫 번째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앞으로의 시민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시 친환경급식 추진 실무협의회’는 우선 소수의 시범연구학교활동을 통하여 향후 전면적인 친환경급식에 대비한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학교급식 혁신을 통하여 지역의 친환경산업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활동하였다.

2004년 두 군데의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2005년부터 확대 실시되는 급식시범학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 전면 실

시되는 2007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제반사항을 점검하게 되었다.

제4차 실무협의회의 예산 사용 지침의 향을 살펴보면 친환경 식재료 구입은 제주지역 생산농가나 생산자 단체를 통하여 조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제주지역의 친환경생산농가와 학교급식의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많은 자료의 수집과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급식시범학교운영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 있다.

### III. 요약 및 결론

#### 1. 요약

본 연구는 친환경급식추진을 위한 아라중학교 ‘초록빛 학교’ 운영,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시민조직으로서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제주연대’ 조직과 그 이후 핵심적인 사업으로써 추진한 주민발의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 제정운동, 민·관 협의체로 추진한 ‘제주시 친환경급식 추진실무협의회’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 활동과 시민단체의 활동이 친환경학교급식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순차적으로 정리하였다.

한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시작된 학교급식개선운동이 ‘초록빛 농장’이라는 체험학습장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체제에서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가 되었다. 또한 도내의 시민단체들과 연계해서 시작한 학교급식개선운동은 사전 의식조사를 통해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여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고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가장 안전한 급식, 가장 우수한 급식’ 즉 친환경우리농산물급식을 명확하게 제창함으로써 전국의 학교급식 개선운동을 ‘아이들 우선’이라는 사회적

가치운동으로 끌어올리는데 선도적인 기여를 하였다.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는 우리 사회의 희망이며 우리 어른들은 그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을 상업적 논리가 아닌 공공성의 논리·교육적 논리로 접근하고, 친환경 농산물로 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주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라중학교 ‘초록빛 학교’ 운동은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라는 법적 근거에 접근하는 일선학교의 실천운동이었으며 학부모나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을 대변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되었다. 또한 시민운동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는 시민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요구와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시민운동의 열쇠임을 보여주었다. 제주도내에 있는 100여개의 시민단체를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나뉠대로의 힘을 응집시켜 조례제정이라는 큰일을 성공시킴으로써 제주도민들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아라중학교 ‘초록빛 학교’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를 실천운동의 장으로 삼고, 조례제정운동을 통해 법적인 근거의 틀을 확고하게 마련하였으며, ‘제주시 친환경급식 추진실무협의회’ 활동을 통해 제주지역 1차산업 회생과 환경보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높였으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원활한 수요과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제주 지역의 학교급식 운동의 커다란 성과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습관의 개선을 도모하며, 학교급식과 친환경 농업을 접목시켜 제주 농업 회생의 전기를 마련함은 물론, 청정제주의 실현에 이바지했다는 데 있다.

제주도내 학교급식은 타시도와는 달리 100% 직영급식이다.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되어 2007년도에는 전면 친환경급식이 실시된다.

전국 광역단체에서는 최초로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확하게 한 친환경학교급식운동에 걸맞게 학교급식에 친환경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아이들 입맛에 맞는 식단을 연구하며, 친환경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앞으로 꾸준히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들의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 2. 결론

아라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활동과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사용에관한지원조례’ 제정운동, ‘제주시 친환경급식 추진실무협의회’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학교 급식의 개선운동은 학교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식단의 개선을 위한 가정과 사회 전반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끼 또는 두끼의 식단으로 학생들의 서구화된 입맛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며, 이는 가정과 사회, 학교가 연계한 식생활 개선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현 학교의 수업 위주의 체제에서는 체계적인 환경교육과 체험교육 및 현장학습을 실시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위해서 지역사회의 물적,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한 다양한 교육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둘째, 친환경우리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유통되고 있는 우리농산물의 검증에 대한 신뢰도는 그리 높다고는 볼 수

없다. 사회적으로 만연된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학교급식 개선운동을 통해 친환경우리농산물에 대한 검증방법 및 검증체계를 확실히 하다면 사회전반적으로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일조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학교식단과 가정식단에 이르기까지 친환경우리농산물이 제주도민이 경제적인 부담없이 적절한 가격으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공공성을 띤 유통체계의 구축이 요망된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의 방안과 연계한 친환경급식 실시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급식활동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식재료 검증이나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선정과정에서의 참여,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품질인증번호 재확인 작업 등 친환경급식 실시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방법에 대해 많은 방법적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넷째, 조례 제·개정운동의 주체로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많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들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개정’이라는 목표 자체에 지나치게 매달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제도는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고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존재해야 한다.

조례 제·개정운동에 있어 너무 전문가 위주의 운동인 경우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모든 부분을 담아내려면 법 개정의 전문성이 떨어지게 된다. 조례 제·개정운동의 체계적인 분업화가 이루어져 전문성과 조례 제·개정운동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시민참여가 잘 이루어지려면, 조례의 내용이 시민들의 생활(생활로부터 나오는 관심사)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조례의 내용 속에 시민들의 생활

상 요구가 녹아 있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문제파악단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2004). 제주지역친환경농산물등록현황.
- 교육부.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교육부(2004). 학교급식 실시현황.
- 교육법전 편찬회(2004). **교육법전**. 서울:교학사.
- 교육인적자원부(2004). 2004학교급식실시 현황.
-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2001). 학교급식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교육부(2000).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II.
- 구병삭(1991). **조례제정과 벌칙규정**. 법률신간 제 2054호.
- 김동희(1996). **행정법II**. 박영사.
- 김성국(1995). **지방자치와 분권주의**. 정신문화연구 59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농림부(2003). 2003년도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 아라중학교(2003).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 급식개선 토론회 자료**. 아라중학교 운영위원회.
- 아라중학교(2004). **초록빛 농장 체험학습을 통한 친환경 학교 급식의 의식확산**. 시범학교 보고서.
- 제주도교육청(2003). 다 함께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 제주도교육청(1999). **학교급식관리 실무편람**. 제주도교육청.
- 제주도교육청(2003). 2004학년도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계획 알림(학무 81105-4992)
- 제주도교육청(2004). 2005학년도 친환경급식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 자료

제주도교육청(2004). 2005학년도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시범운영 세부추진계획(학무과-23694)

제주환경운동연합(2004). 2004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제주연대(준)(2003).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급식 개선 토론회 자료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제주연대(준)(2003).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제주연대 출범선언 및 조례제정청구운동 발대식 자료.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제주연대(2004).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토론회 자료.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제주연대(2004).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조례제정 사업보고서 자료.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제주연대(2004). 친환경농업과 친환경급식에 대한 친환경인증농가의식조사 보고서.

Abstract

**A Study on the Environment-friendly School Lunch  
Program in Jeju**

Ko, Young M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Jin Ge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activities of the school council at Ara middle school for the Environment-Friendly School Lunch Program(EFSLP) and make some suggestions or the Movement of School Lunch Program Improvement.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searcher collected and analyzed the Green School movement at Ara middle school and activities of Jeju Association for the Environment-Friendly School Lunch Program(JAEFSLP) and the Jeju City Conference for Promoting Environment-friendly School Lunch Program.

Ara middle school's Green School Movement is a kind of the action,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5, 2005.

attempting to meet the legal basis "School Lunch Program is a part of Education". It also suggests the role and ways of activating the school council which supports various requests and opinions of the parents and the community.

Jeju Association for the Environment-Friendly School Lunch Program(JAEFSLP) was made by about 100 civil groups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Environment-Friendly School Lunch Program. Also, the association succeeds in having the Supporting Act on the Environment-Friendly School Lunch Program established by the Jeju Provincial Council.

The Jeju City Conference for Promoting Environment-friendly School Lunch Program checks out conditions for complete operation of the Environment-Friendly School Lunch Program by designating some schools as model research ones and also seeks after ways of fostering and developing through the reform of the school lunch program.

The result of the study suggest that the Green School movement revolved around the very school that the students spend lots of their time and energy in.

Second, the legal foundation of the EFSLP is firmly construct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In addition, the Jeju city conference enables the community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revival of the primary industry and environment conservation. The conference also makes it possible to construct a system of smooth demand and supply of environment-friendly produce.

Finally, through improving the school lunch program movement, students of the community are supplied with safe and high-quality meals and can

have proper habits of eating for their mind and body. Moreover, the movement contributes to the realization of the "Clean Jeju" as well as the revival of Jeju farming by combining the school lunch program with Environment-friendly farming.

## 부 록 목 차

<부록 1> <친환경·유기농 급식>방안마련에 따른 설문지 .....	1
<부록 2>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실현 제주연대 창립 제안서 .....	2
<부록 3>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출범 .....	5
<부록 4>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 사용에 관한 자원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을 시작하며 .....	8
<부록 5>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명부 제출 기자회견 .....	10
<부록 6>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 .....	12
<부록 7> 기자회견문 .....	16
<부록 8>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 수정안 .....	18
<부록 9>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 .....	22
<부록 10>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지원 계획 .....	26
<부록 11> 전국 학교급식조례제정 현황 .....	32

<부록 1>

<친환경·유기농 급식>방안마련에 따른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초록빛 싱그러운 봄 그 한가운데에 접어들었습니다.

새봄 학부모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름 아니오라 지난 3월 26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문화정착과 지역의 1차 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친환경·유기농급식>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사업추진에 따른 학부모님 의견을 청취하고자 몇가지 설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3.4.

아라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김인찬

\* 아래 설문내용을 확인하신 후 적절한 항목에 V 표시 바랍니다.

1.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개선에 대한 논의와 추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좋은 생각이다 ② 좋은 생각이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좋은 생각이 아니다 ⑤ 할 필요가 없다

2. <친환경·유기농급식> 추진과 관련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식품안전성 교육> <친환경·유기농 농장 방문> 등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 ① 적극 참여하겠다 ② 가능한 참여하고 싶다 ③ 모르겠다  
④ 참가하기 어렵다 ⑤ 전혀 생각이 없다

3. <친환경·유기농급식> 추진과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건강한 식생활 의식개선 차원이면 족하다  
② 학부모 추가 부담 없는 범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  
③ 급식비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④ 장기적인 제도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친환경·유기농급식>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라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귀하

<부록 2>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실현 제주연대 창립  
제안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리는 오랜 논의 끝에 지난 7월 3일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제주연대 준비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의 건강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데 합의하여 도민여러분께 공개하고 뜻을 함께 하는 분들의 동참을 이끌어내 튼실한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을 중심으로 먹거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더 이상 저가 농산물에 의지하여 우리 아이들을 키워온 관행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저가 농산물은 결코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각종 질병을 염두에 두면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21세기의 먹거리 패러다임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각하고 분석하면서 각각의 아이들에 맞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먹거리를 내놓는 것이 미덕이었던 지난 시절의 관행을 지속하는 것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먹거리도 과다 섭취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공동체를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조출한 자리를 출발로 본 조직 결성을 위해 매진하려고 합니다. 본 조직은 100여 개 이상의 단체와 뜻을 함께 하는 도민들이 참여하는 범도민 기구로 발돋움 할 것입니다.

발족할 조직은 소비자와 학부모가 중심에 서서 학교급식과 먹거리를 둘러싼 자치단체의 정책을 바르게 입안하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보장되는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 참여 단체 및 인사(무순)
  - 참교육학부모회제주지부(송상용지부장)
  - 영양사회제주지회(황인주회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이석문지부장)
  - 한농연제주도연합회(문시병회장)
  - 흙살림 제주도연합회(백경호회장)
  - EM환경센터 (이영민이사장)
  - 전국농업기술자제주도연합회(임혁재회장)
  - 천주교제주교구 우리농촌살리기제주본부(고병수신부님)
  - 천주교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임문철 신부)
  - 제주환경운동연합(김경숙의장,홍성직의장,강영훈의장)
  - 제주생활협동조합(김성옥이사장)
  - 제주주민자치연대(김상근대표)
  - 제주여민회(김영란대표)
  - 민주노총제주본부(강봉균본부장)
  -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김영철 본부장)
  - 녹색제주연구소(양진건이사장)
  - 정도회(현천민회장)
  - 김대환 (대신중학교운영위원장)
  - 제주참여환경연대(조성운대표, 이지훈대표)
  - 유기농제주도지부(김대길 상임부회장)
  - 남양테크빌주민자치회(김병준회장)
  - 흥사단(최창범대표)
  - 리서치플러스(김대호대표)
  - 예레동 환경연구회(강병수회장)
  - 제주문화포럼(김연숙원장)
  - 제주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허인옥대표, 고병련대표)
  - 제주녹색소비자연대(김정숙대표, 이정훈대표)
  - 진회중(아라중친환경유기농급식 추진 위원장)
  - ▲ 집행위원장 (이용중 선생)
  - ▲ 간사단체 (참교육학부모회제주지부)

▲ 사무처장 (진회중 아라중 친환경유기농 급식 추진위원장)

□ 사업 목표

- 친환경 우리농산물 급식 실현
- 공공급식 ( 무료 급식 혹은 제한적 무료급식)
- 농촌회생에 기여

□ 조직원칙

■ 완전개방의 원칙(지역, 연령, 성, 정치적 성격에 불문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 와 개인에게 어떠한 제한 없이 가입과 탈퇴를 개방한다.

□ 주요 일정 및 사업

- 8월 28일(목) : 참가 단체 및 활동가 합동 워크숍
- 9월 19일(금) : 출범식 및 토론회
- 급식조례제정운동
- 식생활 의식 개혁운동 등

□ 참가비

회비(연) : 상임대표 20만원, 공동대표 일십만원,  
소규모 주민자치 조직 5만원 개인 2만원 이상

□ 문의처

주소 : 690 - 022 제주도 이도2동 1063- 10 3층  
TEL : 724 - 6908, FAX : 702 -6909

♣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부록 3>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제주연대」 출범

참여인사 및 단체

▲고문 및 자문위원 (가나다순)

- 강재보 (제주도교육위원)
- 강원철 (제주도의회의원)
- 고동수 (제주도의회의원)
- 고상호 (제주시의회의원)
- 고진부 (새천년민주당국회의원)
- 김영희 (제주도의회의원, 전국주부교실제주도지부장)
- 노상준 (제주도교육위원)
- 양정규 (한나라당국회의원)
- 오남두 (제주도교육위원)
- 이영민 (EM환경센터이사장)
- 임기옥 (제주도의원)
- 최창주 (제주도약사회장)
- 현경대 (한나라당국회의원)

▲ 상임공동대표 (가나다순)

- 강상운 (제주시 운영위원장 협의회장)
- 김대환 (대신중학교운영위원장)
- 김순보 (제주동중운영위원장)
- 김영생 (전도초중등어머니회 회장)
- 김인찬 (아라중학교운영위원장)
- 녹색제주연구소 (양진건이사장)
- 민주노총제주본부 (강봉균본부장)
-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김영철 본부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이석문지부장)
-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03 안동우의장, '04 이태권)
- 전국농업기술자제주도연합회 (임혁재회장)
- 제주생활협동조합 (김성옥이사장)

- 제주여민회 (김영란공동대표)
- 제주주민자치연대 (김상근대표)
- 참교육학부모회제주지부 (송상용지부장)
- 천주교우리농촌살리기제주교구본부 (고병수본부장)
- 천주교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임문철 신부)
-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문시병회장)
- 황인주회장 (영양사회제주지회장)
- 흙살림 제주도연합회 (백경호회장)
- 현천민 (정토회 회장)
- ▲ 공동대표 (가나다순)
- 김철완 (새서귀초등학교운영위원장)
- 김태석 (제주지역경제살리기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김택진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 리서치플러스 (김대호대표)
- 문근식 (e 영농조합법인회장)
- 민주노동당제주도지부 (김효상위원장)
- 박희수 (전 도의원)
- 열린우리당(이종우제주도추진본부장)
- 예례동 환경연구회 (강병수회장)
- 유기농제주도지부 (김대길상임부회장)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김옥임회장)
- 전국주부교실제주도지부 (문화순부회장)
- 정대래 교무 (원불교제주교구)
- 제주녹색소비자연대 (김정숙대표, 이정훈대표)
- 제주도청소년지도사협회 (강철남대표)
- 제주문화포럼 (김연숙원장)
- 제주참여환경연대 (조성윤대표, 이지훈대표)
- 제주환경운동연합 (김경숙의장, 홍성직의장, 강영훈의장)
- 진덕진(자연농업협회 제주감귤연구회장)
- 참여와 통일로가는 서귀포시민연대 (송기남준비위원장)
- 흥사단 (최창범대표)

▲ 집행위원장

이용중 (동초등 교사)

▲ 조례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철성(제주상업고등학교 교사)

▲ 정책위원장

김정열 (흙살림제주시지부장)

▲ 교육위원장

문임숙 (제주생협이사)

▲ 사무처장

진희중 (아라중 친환경급식 추진위원장)

▲ 사무처 구성원

유승민 (전교조 총무국장), 고경옥 (제주생협 ), 박재완 (우리농사무국장), 이영웅 (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문미희 (환경운동연합간사)

▲ 간사단체

참교육학부모회 제주지부

<부록4>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을 시작하며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높은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의 제정을 청구하고자 ‘청구인대표자 교부중’과 서명운동의 수임인에 대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제주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음으로써 범도민적인 서명운동의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는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성장기 아이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습관의 개선을 도모하고, 위기에 직면한 제주 농업 회생의 전기를 마련함은 물론, 청정제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조례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도지사나 의원 발의에 기대는 청원 방식의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제주도민 스스로가 발의 주체가 되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운동은 도민이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행정의 관행과 제도를 바꿔냄으로써, 도민의 힘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내는 매우 중요한 주민운동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지역에서 조례제정을 청구하는 주민발의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으며, 지난 11월 11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제주지역의 급식운동이 전국적인 급식운동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모범이 되고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를 사랑하시는 도민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안전하고 질 높은 먹을거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학교급식 개선운동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을 도민 여러분께 제안하며 몇 가지 사항을 함께 인식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급식은 공교육의 한 과정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생존권의 문제이고, 친환경우리농산물 중심의 식습관 형성과 함께 학교주체의 민주적 자치 활동, 인간화교육으로의 소중한 생명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급식운동이 가져올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와 친환경농업의 확산은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위기에 처한 농업의 최소기반을 구축하고, 우리 농산물의 소비관로를 확보함으로써 지역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며 지역농촌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학교급식개선운동은 결국 우리의 땅과 환경을 지켜내는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제주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일이 될 것이며, 또한 청정제주의 이미지가 고양되어 관광 산업에도 탄력을 주고, 궁극적으로 제주 공동체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확신합니다.

####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서명운동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적요건인 20세 이상의 제주도민 7800여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하려 합니다. 제주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제주농업의 회생, 그리고 청정제주의 실현은 이제 도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학교급식개선운동은 안전하고 질 높은 먹을거리에 대한 고민과 함께 새로운 먹을거리의 패러다임과 사회구조적 개혁을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제주공동체의 발전전략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조례제정청구운동의 서명을 포함하여 조례의 운용 등 모든 과정에는 여러분의 주체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제주의 밝은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에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주의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해줄 것입니다.

2003년 11월 24일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제주연대**

## <부록 5>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명부 제출 기자회견

### 1.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덕분에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내고, 제주농업의 활로를 찾으며, 청정제주를 건설하기 위한 조례제정 청구인 서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명에 동참해주시고 진심어린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2. 지난 11월 24일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도 전역에 걸쳐 시작된 서명은 도민 여러분을 비롯한 참가단체 회원과 개인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열정에 힘입어 서명 마감시한인 4월 30일을 훨씬 앞당기며 한달 여 만에 법적 조례제정 청구인명수인 7,800명을 초과하여 19,581명의 서명을 받았고, 자체 분류작업을 거친 후 11,505명의 유효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까다롭고 제약이 많은 서명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가져다 준 것은 학교급식개선운동에 대한 도민들의 바람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뛰어난 주민의식의 발로라 하겠습니다.

▲친환경우리농산물을 우선으로하는 국내산 농산물의 사용과 이에 대한 급식비용의 지원 ▲실질적인 유통과 품질관리를 책임지게 될 친환경우리농산물급식지원단의 설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지원조례’는 제주도 지방자치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주민발의의 조례제정 청구라는데 큰 의미가 있음은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여타 지역 급식조례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 3. 오늘의 청구인명부 제출은 끝이 아니라 급식운동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주민열람과 청구수리, 도의회에의 부의, 그리고 도의회의 통과라는 어려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것 이상으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성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이 운동이 ‘급식연대’의 구성원과 지금까지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셨던 분들만의 운동



이 아니라 우리지역 주민 전체의 운동으로 승화되어 지역의 다른 현안의 해결에 있어서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학교급식개선을 염원하는 제주도민 모두는 제주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과 제주의 정체성을 지켜내게 될 ‘친환경급식지원 조례’가 하루속히 제정되어 예산 편성과 운용이 이뤄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학교급식개선 운동을 솔선해서 실천하는 당당한 도정과 민의를 대변하는 결연한 자치의회의 모습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울러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역사적 선택과 행보를 주시하며 전 도민의 힘을 모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는 제주미래의 희망과 가능성을 약속 해주신 도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올리며, 조례가 올바르게 제정되고 학교급식개선 운동이 정착될 때까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쉽 없이 노력하고 결연한 의지로 실천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2004년 1월 14일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부록 6>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내의 초·중·고교(이하 “학교”라 한다.)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이하 “유아교육기관”이라 한다.)의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습관 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전통식생활과 식문화를 발전·계승하고,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리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하며, 청청제주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 ②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인증을 필한 농·수·축산물을 말한다.
- ③ “우리농산물”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 ④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을 말한다.
- ⑤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의 장은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가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치단체의 의무)**

- ①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 사용에 관한 학교급식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경비를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주도내에 소재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도지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해당 품목이 없거나 생산량이 모자라는 등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식재료인 경우에는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친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의 학교급식 사용에 따른 경비 분담 방법,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군교육청을 통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유아교육기관은 시장·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②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토대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

①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제주도 행정부지사 및 관련 실국장
2. 제주도 교육청 관련 실국장
3. 제주도 의회 의원
4.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자
5.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6. 농어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7.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8. 기타 관련 전문가 등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맡으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친환경급식지원사업단의 설립)**

①도지사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 등의 안정적인 조달과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친환경급식지원사업단을 설립한다.

②친환경급식지원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지도·감독)**

①도지사와 도교육감 및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 사용에 따른 학교급식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친

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 내역을 학교는 도교육감에게, 유아교육기관은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도교육감 및 시장·군수는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원금을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 식재료 구입 등 지원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7>

## 기자회견문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1.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내고, 벼랑 끝에 내몰린 제주농업의 활로를 찾으며, 청정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지원조례’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지난 9일 제주도 의회에 부의되어 내일 22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2. 본 조례는 지난 1년간 생산자, 학부모, 교사들의 부단한 준비과정과 학교급식혁신과 농촌회생에 대한 도민들의 뜨거운 염원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친환경우리농산물을 우선으로 하는 국내산 농산물의 사용과 이에 대한 급식비용의 지원 ▲ 실질적인 유통과 품질관리를 책임지게 될 친환경우리농산물급식지원단의 설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내용을 담아 전국급식개선운동의 지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제주도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주빈발의의 조례제정 청구라는 의미를 갖는 조례안이기도 합니다.

3.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주도 당국이 「국내에서 생산되어」와 「우리 농산물」 용어의 사용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주도는 「국내에서 생산되어」와 「우리 농산물」 용어 사용이 외교통상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WHO협정위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WHO 협정문의 정확한 법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일부 중앙정부 관료들의 소견으로서 식량자급과 농업회생이라는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의 목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와 미국이 가입한 WHO정부

조달협정 제23호 제2항은 정부가 공중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에서 국내산 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공공 목적을 위하여 구입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시장에 다시 판매될 용도가 아닌 한 이른바 내국민 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제주미래의 희망인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제주의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친환경급식지원 조례’가 하루속히 제정되어 예산 편성과 운용이 이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학교급식개선 정책을 솔선해서 실천하는 당당한 도정과 민의를 올바르게 대변하는 결연한 자치의회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역사적 결단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전 도민의 힘을 모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제주연대’는 제주미래의 희망과 가능성을 약속해주신 도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조례가 올바르게 제정되어 학교급식이 친환경 우리 농산물로 이뤄지는 날까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쉽없이 노력하고 실천할 것임을 결연한 의지를 모아 천명합니다.

2004년 4월 21일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부록8>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 수정안

조례안(도지사 제출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제주도내의 초·중·고교(이하 “학교”라 한다)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이하 “유아교육기관”이라 한다)의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습관 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전통식생활과 식문화를 발전·계승하고,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리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하며, 청정제주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제주도지역의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에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유아 및 학생의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리 농산물의 학교 급식 식재료에 우선 사용함으로써 제주지역 농·수·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①“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u>유아교육기관</u>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①“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u>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관할의 유아교육기관</u>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p>
<p>제3조(친환경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의 장은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가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u>사용될 수</u>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친환경농산물 사용) ……… …………… …………… …………… <u>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u></p>



조례안(도지사 제출안)	수 정 안
<p>제4조(자치단체의 의무) ①<u>제주도지사</u>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u>제주도교육감</u>(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 사용에 관한 <u>학교급식지원종합계획을</u>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경비를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u>도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u> 지원한다.</p>	<p>제4조(자치단체의 의무) ①<u>제주도교육감</u>(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u>제주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친환경 농산물 및 우리농산물 사용에 관한 <u>학교급식지원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유아교육기관의 급식지원계획은 시장·군수가</u>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경비를 제 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u>예산의 범위내에서 도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u> 지원한다</p>
<p>제6조(지원방법) . ※ 신설</p> <p>②<u>친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의 학교급식 사용에 따른 경비분담방법, 지원 기준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6조(지원방법)</p> <p>②<u>도지사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친환경 우리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경비등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원한다. 단, 필요시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u></p> <p>③..... ..... .....</p>

조례안(도지사 제출안)	수 정 안
<p>제7조(지원신청 등)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군 교육청을 통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유아교육기관은 시장·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지원신청 등) ① .....  .....<u>지원대상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교육감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u> 제출하여야 한다. ....  .....</p>
<p>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u>제6조 및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u>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한 자 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주도행정부지사 및 관련 실·국장</li> <li>2. 제주도교육청 관련 실·국장</li> <li>3. 제주도의회 의원</li> <li>4.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자</li> <li>5.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li> <li>6. 농어민단체에서 추천한 자</li> <li>7.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li> </ol> <p>(신설)  8. 기타 관련전문가 등</p>	<p>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도지사는 <u>학교급식지원종합계획, 친환경 농산물 및 우리농산물의 조달·품질관리, 제6조 및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u>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p> <p>②.....  .....  .....</p> <p>※ 1~3은 원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시·군의 부시장·부군수</li> <li>5. <u>학부모단체.</u></li> <li>6. <u>교원단체.</u></li> <li>7. <u>농어민단체</u></li> <li>8. <u>시민단체</u></li> <li>9. <u>영양사 단체</u></li> <li>10. 기타 관련전문가 등</li> </ol>

조례안(도지사 제출안)	수 정 안
<p><u>제9조(친환경급식지원사업단의 설립)</u>  <u>①도지사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산물 및 우리농산물 등의 안정적인 조달과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친환경 급식지원사업단을 설립한다.</u>  <u>②친환경급식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삭제)</p>
<p><u>제10조(지도·감독)</u> .  ②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및 우리농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학교는 <u>도교육감에게</u>, 유아교육기관은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도교육감 및 시장·군수는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도지사에게 <u>통보하여야 한다.</u></p>	<p><u>제9조(지도·감독)</u>  ② .....  .....  <u>지역교육청을 통하여 도교육감에게</u>  .....  ③.....  .....<u>제출(보고)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u>  ※ 신설  ⑤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에서 지원한 경비에 대해서 감사를 하여야 한다.</p>
<p><u>제11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10조(시행규칙)</u> .....  .....  .....</p>

<부록 9>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

[소관부서 : 농정유통과]

제정 2004. 7. 21. 조례 제244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지역의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에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유아 및 학생의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리 농산물의 학교 급식 식재료에 우선 사용함으로써 제주지역 농·수·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관할의 유아교육기관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인증을 필한 농·수·축산물을 말한다.

③ “우리농산물”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④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을 말한다.

⑤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의 장은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가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

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자치단체의 의무) ① 제주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 사용에 관한 학교급식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아교육기관의 급식지원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경비를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소재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해당 품목이 없거나 생산량이 모자라는 등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식재료인 경우에는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친환경우리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경비 등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원한다. 단, 필요시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의 학교급식 사용에 따른 경비 분담 방법,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교육감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유아교육기관은 시

장 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 ①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토대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 ②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 ① 도지사는 학교급식지원종합계획, 친환경 농산물 및 우리농산물의 조달품질관리, 제6조 및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제주도 행정부지사 및 관련 실국장
2. 제주도 교육청 관련 실국장
3. 제주도 의회 의원
4.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
5. 학부모단체
6. 교원단체
7. 농어민단체
8. 시민단체

9. 영양사 단체

10. 기타 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맡으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지원대상자의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 사용에 따른 학교급식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학교는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도교육감에게, 유아교육기관은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 및 시장·군수는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을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농산물 식재료 구입 등 지원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⑤ 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에서 지원한 경비에 대해서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10>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지원 계획**

**1. 추진목적**

- 제주도 역사상 최초 주민발의에 의한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사용에관한지원조례』 제정 공포(7월 21일)
-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친환경 우리농산물학교급식을 시행함에 있어
- 기본방침,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학교급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학교급식 대상**

시군별	계		학 교		보육시설	
	개소	인 원	개교	학생수	개소	아동수
계	655	117,701	293	99,341	362	18,360
제 주 시	306	69,826	90	60,221	216	9,605
서귀포시	105	18,354	46	14,844	59	3,510
북제주군	136	16,996	87	14,380	49	2,616
남제주군	108	12,525	70	9,896	38	2,629

※ 자료 : 도교육청 홈페이지 학교현황('04.4.1현재),  
 제주도 홈페이지 보육시설현황('03.12.31현재).

**3. 기본 방향**

- 1) 2007년 전 급식학교 및 보육시설에 대한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시행
- 2) 2005년~2006년 시범실시로 효율적인 학교급식모델 개발
- 3) 기본방침, 지원기준, 지원범위, 지원체계 등 기본방향 제시로 학교급식의 효율적 추진
- 4) 소요예산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주도와 시·군이 공동 분담
  - ※ 2006년부터 교육청 분담방안 강구
- 5) 제주도, 제주교육청, 시·군 등 관련기관의 역할분담 추진



#### 4. 추진 방법

##### 1.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단계별 추진

###### 【제1단계 ⇨ 2005년 시범실시 단계】

- 전체학교(시설제외)의 10% 범위 선정 실시
  - 문제점 도출, 피드백, 보완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급식모델 시스템 구축

###### 【제2단계 ⇨ 2006년 활성화 단계】

- 전체학교(시설제외)의 30% 범위 선정 실시
  -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체계 개선 등 2007년 전면실시를 위한 기반

###### 【제3단계 ⇨ 2007년 정착 단계】

- 전 급식학교 및 보육시설에 대하여 실시
  -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체계 기반 구축, 학교급식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소비 수요 창출(일반사회 파급) 등

##### 2. 지원기준 및 지원체계

###### 가. 지원기준

- 지원대상 : 급식을 시행하는 유치원·초등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의 학생 및 보육

###### 시설 아동

- 지원금액 : 현행 학교급식식재료를 조례에 의한 친환경우리농수산물로 사용할 경우 추가되는 소요 경비(차액분)를 지원함

- 지원품목 : 곡류, 서류, 채소류, 과일류를 도내산 또는 국내산 친환경농산물로 사용할 경우와 육류, 란류, 수산물을 도내산 또는 국내산으로 사용할 경우에 지원함

###### 나. 지원체계

###### ○ 지원신청 및 확정

- 지원받고자하는 학교장 및 시설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지역교육장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시장·군수에게,

고등학교·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지원신청

- 지역교육장은 관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지원신청서를 수합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

- 교육감 및 시장·군수는 익년도 친환경학교급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수합된 지원신청서와 함께 매년 7월 31일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

- 제주도지사는 8월 31일까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익년도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지원계획을 확정

- 제주도지사와 시장·군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예산을 익년도 본예산에 편성

○ 예산의 집행

- 제주도지사는 확정된 익년도 지원예산액을 매년 12월31일까지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은 시군 교육청을 통하여 각급학교에 통보

- 시장·군수는 확정된 익년도 지원예산액을 매년 12월31일까지 관할 보육시설의 장에게 통보

- 시군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 특수학교장, 보육시설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시군의 보조금관리조례 절차 준용)

- 시장·군수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보조금 교부

- 시군교육장, 고등학교장, 특수학교장, 보육시설의 장은 전년도 지원액 집행상황을 매년 1월31일까지 정산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결과 및 정산서를 매년 2월말일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

### 3. 식재료 사용 기준

가. 식재료 사용 원칙

○ 농산물인 경우(공급여건에 따라 사용)

- ① 도내산 친환경농산물    ②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③ 도내산 농산물
- ④ 국내산 농산물

※ 친환경농산물 →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규정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

○ 축산물 및 수산물인 경우(공급여건에 따라 사용)

① 도내산 축·수산물 ② 국내산 축·수산물

나. 식재료 품목별 사용범위 및 가격 결정

○ 사용학교 및 시설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품목을 정하고 공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관련회계법령 준수)

#### 4. 소요예산 지원 및 분담

가. 소요예산 지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나. 소요예산 분담 : 도, 시·군(제주도 50%, 시군 50%)

※ 2006년부터 도교육청 분담방안 검토

#### 5. 기관별 역할 분리 추진

가. 제주도 : 기본방향 설정, 예산확보, 위원회 운영

나. 제주도교육청 : 지원신청서 수합,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종합계획수립시행, 시범학교 선정 운영관리, 세부시행지침 마련 시행

다. 시·군 : 관할 보육시설에 대한 친환경급식종합계획수립시행, 예산확보, 예산의 집행

라. 친환경우리농산물공급업체 : 친환경우리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 6. 2005년 시범급식 계획

##### 1) 개요

○ 기 간 : 2005. 1. 1 ~ 12. 31

○ 대 상 : 전체대상학교의 10% 범위

○ 소요액 : 1,00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제주시 303, 서귀포시 75, 북제주군 72, 남제주군 50

○ 내 용 : 시범학교의 친환경우리농산물식재료 사용 급식지원

##### 2)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 가. 지원기준

○ 친환경우리농수산물 식재료 사용에 따른 추가경비 지원

○ 중식비에 한하여 지원

- 식재료 사용기준은 기본계획에 의함

#### 나. 지원절차

- 지원신청 : 제주도교육청(종합계획수립) → 제주도
- 지원예산액 확정 : 제주도(관련기관·단체 협의)
- 예산집행 및 정산 : 기본계획 예산집행절차 준용
  - ☞ 2006년부터는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지원신청 및 지원

#### 3) 국가기관별 역할 분담

- 가. 제주도 : 기본방침 확정, 예산지원
- 나. 제주도교육청 : 종합계획수립시행, 세부시행지침 마련 시행, 시범학교 선정 운영관리, 급식모델 기반구축
- 다. 시·군 : 예산확보, 예산 집행
- 라. 친환경우리농산물공급업체 : 친환경우리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 4) 평 가

- 가. 1년간 시범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평가회 개최 : 2006. 1월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강구
  - 제주도, 도교육청, 학교, 시군, 급식연대 관계자 등 참여
- 나. 평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 마련 향후계획 반영
  - 효율적인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모델 정립

#### 7. 향후 계획

- 1) 지원예산 편성(제주도, 시군) : 2005년 본예산(의회 설명 등)
- 2)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계획 설명회 개최 : 11월 ~ 12월
  - 교육청 주관 → 학교장, 영양사, 보육시설의 장 등
- 3)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센터 시범사업 유치 추진

#### 8. 협조 사항

- 1) 공동사항 : 관련기관 간 역할분담 사항 철저 이행

2) 제주도교육청

- 가. 2005년 시범실시학교 선정 및 실시계획 수립 시행
- 나. 자체 세부 시행지침 마련 시행(학교교육실시)
- 다. 시범실시를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강구
  - 새로운 급식시스템 모델 개발

3) 시·군

- 가. 2005년 소요예산 확보(본예산 계상)
- 나. 예산의 집행 등 시범실시에 따른 사전 준비
- 다. 친환경농산물 공급 지원협조 및 지역내 친환경농업실천 활성화 추진

<부록 11>

전국 학교급식조례제정 현황

구분	제정여부		명시내용	시행여부
	공포	기타		
주민 발의 (8)	전남(03.9.5)		우수농산물	시행규칙제정, 5개년로드맵설정
		울산(03.11.18) 보류	우수농산물 (의회수정)	보류결정 6.18
	인천(04.4.23)		우수농산물	시행규칙제정, 시 범운영예산확보
	제주(04.7.26)		지역산친환경	심의위구성준비, 3년계획수립
		충북(04.7.12) 의회 보류	국내산농산물	
	경기(04.10.20)		지역및국내산	<b>행자부제소</b>
	서울(04.12.2)	05.2.24재의-3.10의장 직권공포 <b>행자부제 소준비중</b>	국내산안전한 농산물	
		부산(04.12.10)청구	국내산안전한 농산물	위탁업체별도시 민청구
주민 청원 (5)	전북(04.1.6)		지역산친환경	<b>교육감제소</b>
	광주(04.2.28)		우수농산물	시범학교운영
	대전(04.3.5)		우수농산물	기초조례준비
	경남(04.5.25)		우리농산물	<b>교육감제소</b>
	대구(05.2.25)		우수및WTO허 용범위우리농 산물사용	
의원 발의 (3)	경북(04.4.1)		우수농산물	미시행
	강원(04.7.8)		우수농산물	미시행
	충남(04.10.25)		우수및TO허용 범위우리농산 물사용	농어촌무상발표
<b>계</b>	<b>13지역 공포 / 대법제소 3 / 의회논의중1 / 보류 2</b>			

출처 : 학교급식네트워크, 2004